

여기서 안내된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등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신청 안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분류	종류	내 용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오피스텔, 원룸형 구조는 등록 불가

■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진술서(공증 필수)와 신청인의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소유자의 동의 필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소유자,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 ※ 별지 제3·4·5호서식 참조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소유자 동의서 필요
-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양 옆 세대 및 직상·하층 세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
-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제정 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해당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참조

○ 대표자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 할 경우 위임장 ※ 별지 제7호서식 참조

-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업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현장 심사 시 점검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상태가 청결할 것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 해당 주택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안전성을 갖추고 있을 것**

※ 검토사항

-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할 것
 - * 건축물대장 상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안 되어 있어도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수 있음
- 해당 주택이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은 관련 전문가(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 기술사 등)의 의견을 수집·제출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지 말 것
-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 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위와 같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등록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등록관청 : 강남구청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 수 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
- 등록 후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고지서 동시 발급)

■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 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 (유선문의)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 ☎ 02-3423-5552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을 보면 주택의 연면적이 230㎡라고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대부분 230㎡를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등록기준에서의 연면적은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가구(세대)의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230㎡ 이상이더라도, 계단,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가구(세대)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오피스텔, 원룸형 구조는 등록이 불가능하나요?

A.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원룸형 구조의 경우 주민이 거주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Q. 등록하려는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등 여러 용도가 함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한 개의 건축물 내에 다양한 용도가 존재한 복합용도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등록(거주)하고자 하는 곳의 용도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이며,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에어비앤비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강남구청(관광진흥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가입 관련하여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가입 요건 등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면 등록이 가능한 건물인지요?

A. 건축물대장 상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장점검 과정에서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등록을 못해 드린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해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거주하시고 있는 주택 또는 부동산을 새롭게 계약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건축물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일 경우, 해당 위반 사항이 해소된 후에는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노후건축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노후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관련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건축물 안전확인서 또는 안전점검 결과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위홈(wehome), 미스터멘션 등을 통해서 내국인 숙박객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는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도록 위홈, 미스터멘션 등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기에, 이곳에 별도로 등록하면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아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여행업만 해당)	전자우편주소(여행업만 해당)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아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 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업 소 명	영문명 :
대 표 자	영문명 :
주 소	
거 주 인 원	총 명 (운영자 포함 영업장 내 실거주인원)

2. 시설개요

주택의 종류	☐ 단독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 ☐ 아파트			
주택의 총면적	m^2		사업장 면적	m^2
주택 내 객실 수	개	영업용 객실수	침대형 온돌형	개 개
외국어 안내	☐ 영어 ☐ 일어 ☐ 중국어 ☐ 그 외(			

3. 영업계획

마케팅 계획	
숙박 외 제공 프로그램	

4. 그 외 관련사항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소유자 동의서

업 소 명		
부 동 산 표 기 (주 소)		
임 대 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임 차 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등록)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강남구청장 귀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입주민 동의서

☐ 업소명 :

☐ 주 소 :

☐ 입주민 동의

_____호(층) 성명_____ (서명)

_____호(층) 성명_____ (서명)

_____호(층) 성명_____ (서명)

_____호(층) 성명_____ (서명)

_____호(층) 성명_____ (서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등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_____ (서명)

강남구청장 귀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리사무소 동의서

☐ 업소명 :

☐ 주 소 :

공동주택인 _____ (공동주택명) _____

_____ 동 _____ 호에서 하고자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 영업
활동이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강남구청장 귀하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 업소명 :
- ☐ 주 소 :
- ☐ 대표자 :
- ☐ 결격사유 조회대상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상기인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강남구청장 귀하

위임장

☐ 업소명 :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관계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관련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강남구청장 귀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 지		전 화 번 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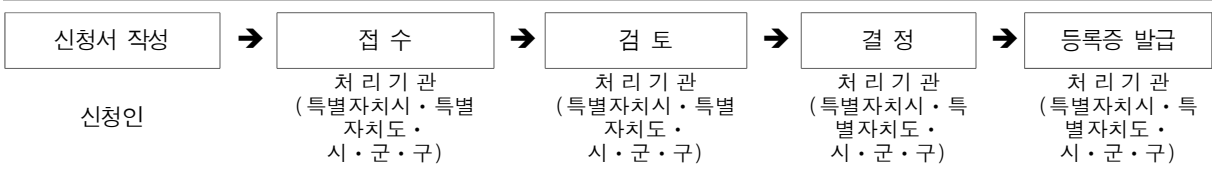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④ 상호 (명칭)				
⑤ 업종				
⑥ 영업소소재지		(전화:)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연월일		. . .		
⑨ 재발급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관광사업등록증 ☐ 카지노업허가증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 테마파크업허가·신고증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000원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관광편의 시설업: 5일 ○ 카지노업: 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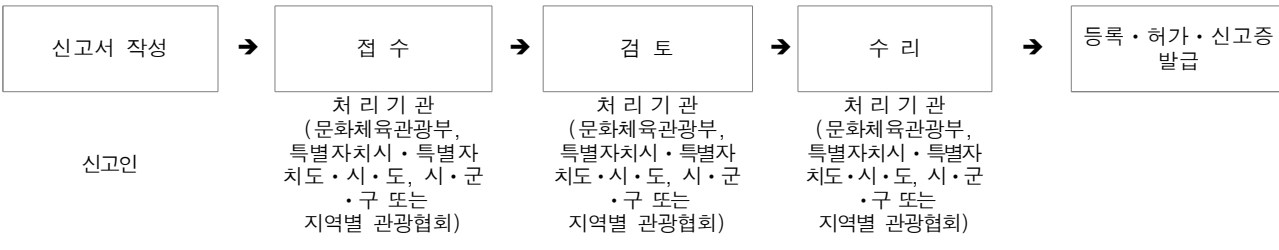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	-------	----------------

작성 방법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행정처분 내용 및 절차 진행사항

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유의사항: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란 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위 표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상자와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표를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이 있는 경우) 양도인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1호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한 경우) 양수인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1호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처분관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4. 양수인은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다는 사실과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통보서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참고사항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지역별 관광협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

(주소지, 사업자명 기재)

연 번	날 짜 ¹⁾	성 명 ²⁾	국 적	숙박일수	수령요금 ³⁾
1					
2					

1) 연도, 월, 일별로 쓰되, 최초 입실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2019년 12월 31일

2) 성명은 여권에 표기된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기재할 수 있음.
일행이 있는 경우, 대표자 성명 외 인원 수를 기입함.(예시: James Peters 외 3명)

3) 원화를 기준으로 하되, 외국화폐로 받은 경우 화폐명 또는 기호를 표시함. (예시: 20달러 또는 20\$)